

'1년2개월 여정' 끝내는 정경심 재판

23일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진행

양측, '표창장 위조' 두고 타임라인 따라 시연공방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중앙대 교수가 약 1년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주요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심리할 정 교수 사건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문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둘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와 연관된 사모펀드 혐의다. 이중 양측의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혐의는 입시비리 혐의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중앙대 총장 명의의 최우수생 시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파일과 딸 표창장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당시 오후 2시23분께 중앙대 PC 1대에 '직인.JPG'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2분 뒤 '인턴심학인서(호텔3)'이 열람된다. 이 파일은 딸 조씨 이름의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같은날 오후 4시20분 아들 조씨의 상장이 '총장님 직인.PNG'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됐고, 20분 뒤 워드 문서에 삽입된 형태로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다. 이후 중앙대 총장 직인이 캡처되고 확장자가 JPG 형태로 저장된 후 PDF 파일로 변환됐다. 검찰은 이같은 작업을 정 교수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타임라인에 따라 검찰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범정에 직접 프린터를 가져와 위조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조씨의 표창장 원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며 똑같이 프린터를 가져와 반박에 나섰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가 확

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만큼 양측의 시연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 교수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한 심리도 오랜 시간 진행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앞서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정 교수의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출자액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 정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혐의, 코링크PE 직원을 시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3개 혐의가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둘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거짓 변경 보고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허위 컨설팅 계약 수수료 부분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봤다. 통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타인에게 은닉 교사를 한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범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며 "실제 공범 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봉우기자

상대 낙선 목적 허위글 공표 국회의원 동생, 2심도 벌금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친형과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 사항과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자신의 형과 경쟁 관계에 있던 상대방 후보자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과 경쟁 중인 민생당 예비 후보를 지칭, '알맹이도 없는 내용으로 보도자료 내서 홍보받고 온갖 신문에 도배질을 해 놔주겠다. 1개당 200~300만 원씩 주고 언론과 유명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 지목된 예비후보는 수상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었다. A씨의 형은 21대 총선에서 당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1심은 "A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왜 장난쳐' 초등생 마구 폭행한 강사 2심도 벌금형

수업 중 장난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방과 후 강사인 A씨는 2016년 9월 20일과 12월 13일·20일 전남 한 지역 초등학교 교육정보실에서 손바닥으로 B(9)군의 머리·팔·등·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친다. 컴퓨터 앱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등 시킨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황 관계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진자 접촉 뒤 자가격리 위반 대학병원 직원 벌금형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병원 직원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병원 근무 중 광주 지역 417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9월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27분 동안 광주의 한 산부인과와 커피숍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감염증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도 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두환 항소심, 광주지법 제1형사부가 맡는다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89)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심리는 광주

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21일 상황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다만, 1980년 5월27일은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 신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원심 판결은 그동안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헬기 사격을 다시 증명했다는 평가다. '신군부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해 시민을 적으로 간주,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사실도 재입증했다.

서선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